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산금 조정

1.0 목적

규칙 제21.10조(전력가격 안정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는 발전사업자의 정산금조정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0 적용범위

본 별표는 규칙 제21.10조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가 보유하는 발전기의 정산에 적용한다. 단, 양수발전기 및 신·재생에너지발전기는 제외한다.

3.0 책임

- 3.1 전력거래소는 본 별표에 따라 전력거래 정산금의 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2 판매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는 본 별표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전력거 래소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4.0 기본워칙

- 4.1 본 별표의 정산조정계수는 비용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5.31>
- 4.1.1 정산조정계수는 규칙 제21.10조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. <개정 2009.12.31, 2012.5.31>
- 4.1.2 정산조정계수 적용으로 전원별 투자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도록 결정하여 야 한다. 단, 원자력, 국내탄 등과 같이 정부정책에 의해 운영되는 전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2012.5.31>
- 4.1.3 <삭제 2015.9.30>
- 4.2 정산조정계수는 연 1회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칙 제2.2.2.8조에 의한 '발전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'이 별도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매 분기 별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5.31>
- 4.3 <삭제 2020.10.1.>
- 4.3.1 <삭제 2020.10.1.>
- 4.4 규칙 제21.10조 제1항 제3호 발전기의 전력거래대금은 기저전원비율, 계통한계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으로, 연료비, 운전유지비, 건설투자비 및 투자보수 등이 회수되도록 조정하되, 구체적 사항은 규칙 제2.2.2.8조에 의한 "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"

에서 정한다. [신설 2012.5.31.]

4.5 정산조정계수가 1인 경우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정산요소별 정산금을 산정한다. [신설 2021.1.1.]

5.0 정산금 조정기준

5.1 최종 정산금 산정

발전사업자의 정산금 중 MEP, MAP, EBCO, XEGW는 별표 2의 정산기 준에서 산정한 정산금 대신 본 별표에서 보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21.1.1., 2024.10.29.>

- 5.2 발전사업자의 정산금 조정
- 5.2.1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보정 <개정 2021.1.1.>

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(별표 2의 정산기준 I.1.가.①)에서 발전기의 연료비용을 차감한 값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며,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다.

 $MEP_{i,t} = 0$ 이면, $XTMEP_{i,t} = 0$

그렇지 않으면, XTMEP_{i,t} = Max {(MEP_{i,t} - [Max {(MEP_{i,t} - SCMEP_{i,t}), 0} × π_i + SCMEP_{i,t}]), 0} <개정 2021.1.1.> 여기서,

 π_i : 비용위원회에서 정한 국내탄(π_{dc}), 석탄(π_c) 및 원자력(π_n) 및 일반 발전기(π_p)의 정산조정계수이며, 1보다 작거나 같다. <개정 2012.5.31.> SCMEP $_{i,t}$: 해당 발전기의 변동비로, QPCi \times Min(MGO $_{i,t}$, RA $_{i,t}$ + ϵ) 2 +

LPCi \times Min(MGO_{i+}, RA_{i+}+ ε) + NLPC_i \times GF_{i+} <개정 2021.1.1.>

GF_{i,t} : MGO_{i,t} = 0 이면 0, 그렇지 않으면 1 <개정 2009.12.31., 2012.5.31.>

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은 아래와 같다. <개정 2009.06.30., 2021.1.1.>

 $RMEP_{i,t} = MEP_{i,t} - XTMEP_{i,t}$

5.2.1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보정<개정 2021.1.1.>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(별표 2의 정산기준 I.1.가.①)에서 발전기의 연료비용를 차감한 값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며,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다. <개정2012.5.31>

 $MEP_{i,t} = 0$ 이면, $XTMEP_{i,t} = 0$

그렇지 않으면,

여기서,

 π_i : 비용위원회에서 정한 국내탄(π_{dc}), 석탄(π_c) 및 원자력(π_n) 및 일반발전기(π_p)의 정산조정계수이며, 1보다 작거나 같다.<개정 2012.5.31>

SCMEP_{i,t}: 해당 발전기의 변동비로,

 $QPC_i \times Min(MGO_{i,t}, RA_{i,t}+\epsilon)^2 +$

 $LPC_i \times Min(MGO_{i,t}, RA_{i,t} + \epsilon) +$

 $NLPC_i \times GF_{i,t}$

GF_{i.t}: MGO_{i.t} = 0 이면 0, 그렇지 않으면 1

<개정 2009.12.31.. 2012.5.31.>

단,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변동비(SCMEP_{it})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
 $SCMEP_{i,t} = QPC_{i,x,t} \times \{Min(MGO_{i,t}, RA_{i,t} + \epsilon)\}^2$

+ $LPC_{i,x,t} \times Min(MGO_{i,t}, RA_{i,t}+\epsilon)$

+ $NLPC_{i,x,t} \times GF_{i,t}$

여기서,

QPCixt: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ixt:1조합 2차증분가격계수

LPC_{i,x,t}: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_{i,x,t}:1조합 1차증분가격계수

NLPC_{ixt}: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_{ixt}:1조합 가격상수

 $NGT_{i,x,t}$: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x:1조합 운전 시 가스터빈발전기의 운 전대수

x : 다조합 복합발전기 i가 $Min(MGO_{i,t},\ RA_{i,t}+\epsilon)$ 를 발전하기 위한 운전조합

단, GT모드 운전시 변동비는 비용평가자료의 GT모드 입출력 특성계수를 적용한 비용계수를 사용한다.

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은 아래와 같다.<개정 2009.06.30., 2021.1.1.>

 $RMEP_{i,t} = MEP_{i,t} - XTMEP_{i,t}$

[시행일: 2026.1.1.부터 시행예정]

- 5.2.2 <삭제 2021.1.1.>
- 5.2.3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인 경우,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조정

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인 경우,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(별표 2의 정산기준 I.1.가.③)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하여 조정금액(XTMAPi,t)을 산정하며, 세부 산정수식은 아래와 같다.

 $MAP_{i,t} = 0$ 이면, $XTMAP_{i,t} = 0$

그렇지 않으면, XTMAP $_{i,t}$ = MAP $_{i,t}$ imes (1 - π_i)

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인 경우,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(별표 2의 정산기준 I.1.가.③)은 아래와 같다.

RMAP_{i,t} = MAP_{i,t} - XTMAP_{i,t} <개정 2021.1.1.>

5.2.4 시운전 전력의 정산금 조정

상업운전 이전에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정산금(별표 2의 정산기준 I.7)에서 연료비용을 차감한 값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하여 조정금액($XTEBCO_{i,t}$)을 산정하며, 세부 산정수식은 아래와 같다. <개정 2012.5.31.,2020.10.1.> $EBCO_{i,t} = 0$ 이면, $XTEBCO_{i,t} = 0$ 그렇지 않으면.

 $XTEBCO_{i,t} = Max\{(EBCO_i - [Max\{ (EBCO_i - \sum_t SCEBCO_{i,t}), 0 \} \times \pi_i + (EBCO_i - \sum_t SCEBCO_{i,t}), 0 \} \times \pi_i + (EBCO_i - \sum_t SCEBCO_{i,t}) + (EBCO_i$

 $\label{eq:min(EBCO_i, SCEBCO_i,t)} \begin{aligned} & \operatorname{Min}(EBCO_i, & \sum_{t} SCEBCO_{i,t})]), & 0 \end{aligned}$

여기서, $SCEBCO_{i,t}:QPCi \times MGO_{i,t}^2 + LPCi \times MGO_{i,t} + NLPC_i \times GF_{i,t}$

상업운전 이전에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정산금(별표 2의 정산기준 I.7)은 아래와 같다.

 $REBCO_{i,t} = EBCO_{i,t} - XTEBCO_{i,t}$

5.2.4 시운전 전력의 정산금 조정 <개정 2021.1.1.>

상업운전 이전에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정산금(별표 2의 정산기준 I.7)에서 연료비용을 차감한 값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하여 조정금액 (XTEBCO_{i,t})을 산정하며, 세부 산정수식은 아래와 같다. <개정 2012.5.31>

EBCO_{i,t} = 0이면,XTEBCO_{i,t} = 0 그렇지 않으면,

 $XTEBCO_{i,t} = Max\{(EBCO_i - [Max\{ (EBCO_i - \sum_t SCEBCO_{i,t}), 0 \} \times \})$

 π_i + Min(EBCO_i, \sum_t SCEBCO_{i,t})]), 0}

여기서, $SCEBCO_{i,t}: QPC_i \times MGO_{i,t}^2 + LPC_i \times MGO_{i,t} + NLPC_i \times GF_{i,t}$

단,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변동비(SCEBCO_{i,t})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 SCEBCO_{i,t} = QPC_{i,x,t} \times MGO_{i,t} 2 + LPC_{i,x,t} \times MGO_{i,t} + NLPC_{i,x,t} \times GF_{i,t} 여기서.

QPC_{i,x,t}: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_{i,x,t}:1조합 2차증분가격계수

LPC_{i,x,t}: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_{i,x,t}:1조합 1차증분가격계수

NLPC_{i.x.t}: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_{i.x.t}:1조합 가격상수

 $NGT_{i,x,t}$: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x:1조합 운전 시 가스터빈발전기의 운 전대수

x : 다조합 복합발전기 i가 MGO_{i,t}를 발전하기 위한 운전조합 단, GT모드 운전시 변동비는 비용평가자료의 GT모드 입출력 특성계수 를 적용한 비용계수를 사용한다.

상업운전 이전에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정산금(별표 2의 정산기준 I.7)은 아래와 같다.

 $REBCO_{i,t} = EBCO_{i,t} - XTEBCO_{i,t}$

[시행일: 2026.1.1.부터 시행예정]

보칙 제21.3조 1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운전일정을 조정하여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하였으나, 초기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의 EACO_{i,t}에 대한 정산금 조정은 연료비용을 차감한 값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하여 조정금액 (XTEACO_{i,t})을 산정하며, 세부 산정수식은 아래와 같다.

 $EACO_{i,t} = 0$ 이면, $XTEACO_{i,t} = 0$

그렇지 않으면,

XTEACO_{i,t} = Max {(EACO_{i,t} - [Max {(EACO_{i,t} - SCEACO_{i,t}), 0} $\times \pi_i$ + SCEACO_{i,t}]), 0}

SCEACO $_{i,t}$: 해당 발전기의 변동비로, QPC $_i$ × MGO $_{i,t}$ 2 + LPC $_i$ ×MGO $_{i,t}$ + NLPC $_i$ × GF $_{i,t}$

GF_{i,t}: MGO_{i,t} = 0 이면 0, 그렇지 않으면 1

 $REACO_{i,t} = EACO_{i,t} - XTEACO_{i,t}$

<개정 2020.10.1.>

5.2.5 공급가능용량 이상으로 급전지시한 전력량 정산금 조정

공급가능용량 이상으로 급전지시한 전력량 정산금에서 연료비용을 차감하고 그 값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하여 조정금액(XTXEGW_{i,t})을 산정하며 세부 산정수식은 아래와 같다. <개정 2012.5.31.>

 $XEGW_{i,t} = 0$ 이면, $XTXEGW_{i,t} = 0$

그렇지 않으면,

$$\begin{split} & \text{XTXEGW}_{i,t} = \text{Max}\{(\text{XEGW}_{i,t} - [\text{Max}\{(\text{XEGW}_{i,t} - \text{XVC}_{i,t}), \ 0\} \times \ \pi_{i,} \ + \ \text{XCP}_{i,t} \ + \\ & \text{Max}(\text{XVC}_{i,t}, \ 0)]\}, \ 0\} \end{split}$$

<개정 2009.12.31., 2012.5.31.,2020.10.1.>

공급가능용량 이상으로 급전지시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(별표 2의 정산 기준 I. 11.나)은 아래와 같다.

 $RXEGW_{i,t} = XEGW_{i,t} - XTXEGW_{i,t}$

- 5.3 <삭제 2015.9.30.>
- 6.0 <삭제 2021.1.1>
- 7.0 정산조정계수 연간 적용범위(0<π≤1) 내에서의 정산금 조정 [신설 2020.12.1]
- 7.1 제21.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당해연도 4/4분기 중 재산정된 정산조정계수(이하 "재조정계수")가 '1'을 초과하거나 '0' 이하이고, 당해연도 내 이전기간에 적용된 정산조정계수(이하 "기존계수")가 '1'이하인 경우로서 정산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산할 수 있다.
- 7.1.1 재조정계수가 '1' 초과인 경우 기존 계수가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정산조정계수 상한값('1')과 기존계수 적 용시 차이금액과 재조정계수가 상한값('1')을 초과하여 정산하지 못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정산한다.
- 7.1.2 재조정계수가 '0' 이하인 경우 기존 계수가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정산조정계수 하한값('0.0001')과 기존계 수 적용시 차이금액과 재조정계수가 하한값('0.0001')에 미달하여 정산하지 못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정산한다.